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경희의료원 PACS팀 · 원광보건대학 방사선과¹⁾

박범진 · 유병규¹⁾ · 이종석¹⁾ · 정재호 · 손기경 · 강희두

— 국문초록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 없이 발급되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①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②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③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 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하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을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 : PACS, 개인정보보호, 의료영상

*접수일(2009년 7월 31일), 1차심사(2009년 8월 7일), 2차심사(2009년 8월 28일), 확정일(2009년 9월 1일)

- 이 논문은 2008년도 원광보건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교신저자 : 유병규, (570-750)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번지
원광보건대학 방사선과
TEL : 063-840-1236, FAX : 063-840-1239
E-mail : bkyou@wkhc.ac.kr

I. 서 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IT) 발달의 산물인 의료정보시스템은 단순한 의료기관 내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환자의 진료 기록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다.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PACS)같은 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병원 내의 각 부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종이나 필름을 보관할 창고가 불필요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¹⁾.

특히 의료영상 분야는 1895년 X-Ray 발견 이후 지난 100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필름이라는 매체에 의존하여 왔으나 정보화의 발달로 디지털 매체가 필름을 대체하고 있으며 디지털 의료영상기술의 산물인 PACS는 진료에 편리함을 주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된 영상을 통해 환자들의 전원 및 의료정보 활용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우리 생활 각 분야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의 중앙 집중화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개인정보가 손실되거나 대량으로 유출될 위험성도 커져 결국 오남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²⁾.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³⁾에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⁴⁾에서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정보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의무기록이나 진료카드를 거명하면서 이에 기록되는 내용(진료기록)이라는 견해도 있고⁵⁾, “의료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또는 의료 제공을 행하기 위하여 진료 등을 통해서 얻은 환자의 건강 상태나 그들에 대한 평가 및 의료 제공의 경과에 관한 정보”이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의료정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⁶⁾.

즉, 개인의료정보는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받기 전에 작

성하는 환자의 기본 정보와 의사가 치료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이나 검사에 관련된 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의사가 진단한 진단정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정보는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수집된 정보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현재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을 본인, 환자의 가족, 대리인으로 구분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있다. 의료영상 또한 의료법 21조**에 의해 본인 외

* [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2003. 9) -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혼자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한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 [의료법 제 21조 2항](2009. 1)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 제 43조, 제 43조의 2 및 제 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 5조, 제 11조, 제 11조의 3 및 제 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 106조, 제 215조 또는 제 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 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 제 2항 및 제 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

에도 사본을 발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신분확인 절차 없이 불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과 의무기록과 의료영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떠한 정보관리 방안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⁷⁾.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 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조사 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였으며 그 기간 중 설문조사,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기간은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3개월간이었다.

연구 조사 대상 범위는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조사 내용은 의료영상 복사 신청 시 의료법 제21조 2항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확인여부와, 발급 시 ① 본인일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확인, ②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서류, 등본 등), ③ 제3자 대리인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기준으로 정하여(Table 1) 이 서류들을 제출 받고 있는 지 여부와 이 절차를 규정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 등 의료영상 복사 발급 현황 조사하였다. 제3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위임장의 도장이 적법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이며 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에서도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구비서류 기준으로 마련하였다.

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 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또한 K 의료원에 영상 복사 발급 의뢰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의 여부 및 내용, 즉 의료영상 복사 시 구비서류 현황을 조사 하였다.

발급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도권 조사 대상 종합병원의 프로세스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의료영상 발급 프로세스 개발하였다.

Table 1. A preparing suitable required documentations for medical imaging issuance

본인	가족	제 3자
신분증 확인	가족관계서류,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III. 결 과

1.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영상 발급현황 결과

1) 의료영상 복사 발급 현황 조사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영상 복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Table 1의 기준에 따라 ‘모든 조건을 충족’,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누구나 신청가능’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Table 2. The distribution of required documentations for medical imaging issuance in medical facilities

구 분	병원 (곳)	%
모든 조건 충족	16	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4	12%
누구나 신청가능	4	12%
알 수 없음 (진료과에서 신청)	9	27%
계	33	100%

2. K 의료원 의료영상 복사 시 구비서류 현황 조사

K 의료원은 Table 1의 ‘의료영상 복사 신청 시 구비서

류 기준'에 따라 CD를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 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중 사전에 서류준비항목을 안내받지 않거나 문의하지 않아 필요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신청하러 온 경우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5월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202건(53%),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120건(31%),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61건(16%)였으며 6월은 완비 191건(45%), 일부 미비 146건(34%), 미비 88건(21%), 7월은 완비 236건(51%), 일부 미비 150건(32%), 미비 77건(17%)였다. 3개월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A preparing suitable required documentations for medical imaging issuance

	완비	일부미비	미비
건수	629	416	226
%	49	33	18

Table 1의 구비서류 기준에 따라 완비, 일부미비, 미비로 구분함

3. 의료영상 발급 프로세스 개발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영상복사 업무절차를 규정하여 전산팀과 협의 하에 복사 관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Fig. 1). 신청 시 환자와의 관계, 발급사유 및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는지 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였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언제든지 복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2).

또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모형도(Fig. 3)를 작성하였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발급불가로 처리하였으며 본인이 아닌 경우 아래과정(N)으로 넘어간다.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직계가족인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다. 서류 미지참시 의료기관의 환자정보를 참고하여 질의하고 불일치시 발급불가 한다. 신분증 미지참시도 발급불가하며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왼쪽과정(N)으로 넘어간다. 본인,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미지참시 발급불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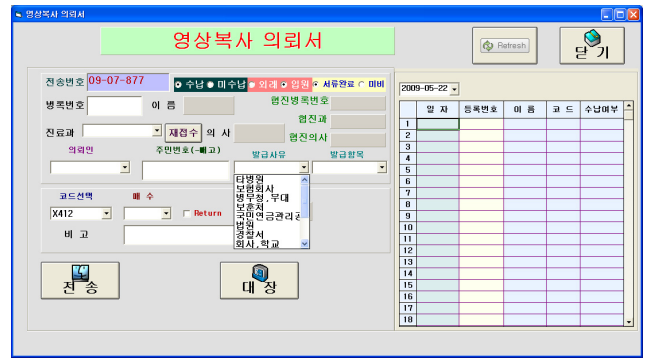


Fig. 1. The management of software program for medical imaging issu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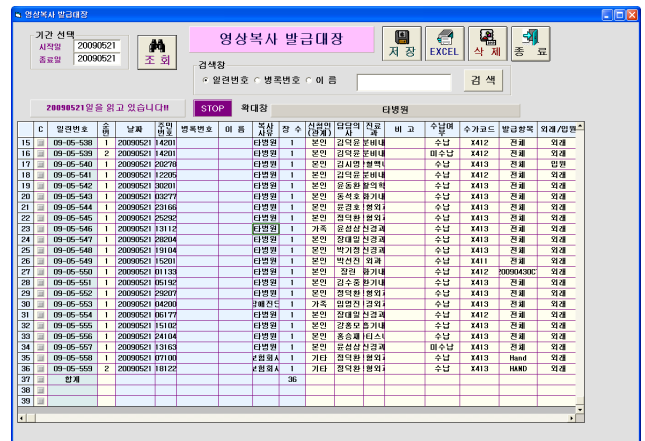


Fig. 2. The list of software program to management for medical imaging issuance

IV. 고 찰

기존의 의료영상 발급은 원본 필름을 복사대출 하였으며 의무기록 사본발급과는 별개의 과정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발급되는 의무기록 사본과는 달리 의료영상은 특별한 신분확인 없이 발급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이는 의료영상을 의료정보가 아닌 별도의 정보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료법시행규칙] 제 15조를 보면 “의료정보는 1) 환자명부, 2) 진료기록부, 3) 처방전, 4) 수술기록부, 5) 검사소견기록,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7) 간호기록부, 8) 조산기록부, 9) 진단서로 이루어진다⁸⁾.”로 되어 있고 보건의료기본법⁹⁾에 의하면 “보건의료정보라 함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수자,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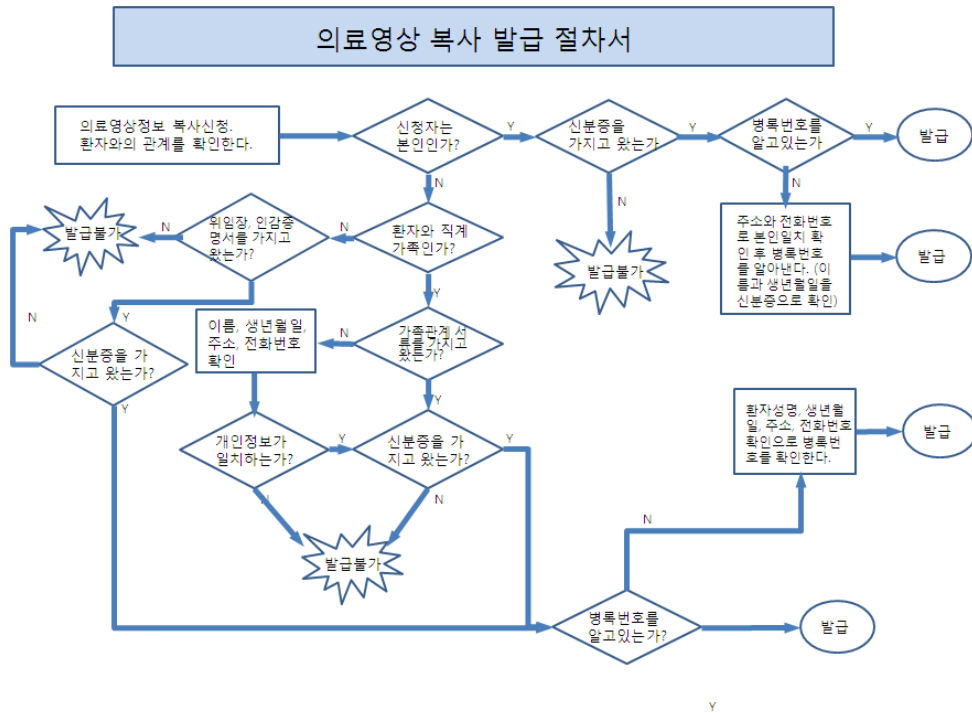


Fig. 3. The processing of medical imaging issuance

되어 있다.

국제적인 경우로 미국의 의료정보와 관련된 HIPPA¹⁰⁾에는 개인의료정보에서 프라이버시보호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저장된 정보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이문서나 심지어는 구두로 전달된 내용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결국 의료영상은 당연히 의료정보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와 의료법 제21조 2항에 따라 일반 의무기록 복사 대출과 같은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에게는 프라이버시권¹¹⁾이 있으며 자신과 관계된 정보를 통제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¹²⁾. 이것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¹³⁾이라 하며, 이 권리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사용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여러 의료기관의 의료영상 발급 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는 곳이 49%로 절반 정도가 신분확인 후 발급하고 있으나 환자와의 관계서류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거나 혹은 신분증 없이도 누구나 신청 가능한 곳도 24%에 달했다.

이러한 현 실정은 의료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료된다. 또한 27%가 진료과에서 복사신청을

직접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어떠한 신분 절차 과정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는 본인 외에 신청하는 경우가 족관계 서류나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비서류도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관리 소홀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의료영상을 다루거나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K 의료원 의료영상 복사 시 구비서류 현황 조사 결과에서 모두 준비한 경우가 49%, 일부 미비인 경우가 33% 모두 미비인 경우가 18%로 나왔다. 조사당시 환자와의 관계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는데, 모두 준비한 50%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3자가 와서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이 다음날 다시 서류를 준비해 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의료정보를 사용하려는 신청자들의 의료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의료영상 복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복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환자와의 관계와 발급목적, 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외에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복사 프로세스를 도형화 하여 객관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직까지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않은 신청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 시 마찰을 줄이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V. 결 론

현재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신규법안이 생성되거나 기존의 법안들도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 예로 행정안전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신규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이 고객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14개 업종에는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09.06.22). 따라서 이에 관련한 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신분확인을 통해 의료영상을 발급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뿐 아니라 신청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앞으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갑작스러운 신분확인 절차보다는 점차적인 의료기관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환자의 편의 도모와 정보보호의 이해를 넓혀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잘못 생성되고 잘못 관리된 의료영상은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영상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

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상명,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2. 이영규, “개인의료정보침해시 사법적 주제방안”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2008.2.29 법률 제 8871호, 제 2조 2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8.2.29 법률 제 8871호 제 2조 6항
5. 이부하, “환자의 의료정보권”, [한양법학] 제 17집, 2005, 178쪽 이하 ; 이인영, “개정 의료법의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립법학 Forum] 제 11권, 2002, 138쪽 이하
6. 김상찬, “의료정보의 제공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 8권, 2003, 202쪽 이하
7. 정현백,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공공부문의 정보관리”, 연세행정논총, 제 29집 183-204
8. 의료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9.7.1 제 123호
9. 보건의료기본법 - 2008.3.28 법률 제 9034호
10.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건강보험의이전및책임에관한법률
11. Diniel J. Solove/ Marc Rotenberg, Information Privacy Law, Aspen Publishers Inc., 2003, p.27
12. 현재 2005.5.26. 99헌마513등, 판례집 17-1, 682쪽
13. 백윤철,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제 9집 제 3호, 2003.10

• Abstract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Bum-Jin Park · Beong-Gyu Yoo¹⁾ · Jong-Seok Lee¹⁾ ·
Jae-Ho Jeong · Gi-Gyeong Son · Hee-Doo Kang

Department of PACS Team, Kyung Hee Medical Center

¹⁾*Department of Radio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Purpose : The medical imaging issuance is changed from conventional film method to Digital Compact Disk solution because of development on IT technology.

However other medical record department's are undergoing identification check through and through whereas medical imaging department cannot afford to do that.

So, we examine present applicant's recognition of private intelligence safeguard, and medical imaging issuance condition by CD & DVD medium toward various medical facility and then perform comparative analysis associated with domestic and foreign law & recommendation, lastly suggest standard for medical imaging issuance and process relate with internal environment.

Materials and methods : First, we surveyed issuance process & required documents when situation of medical image issuance in the metropolitan medical facility by wire telephone between 2008.6.1~2008.7.1.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law Article 21~clause 2, suggested standard through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occasionally — ① in the event of oneself → verifying identification, ② in the event of family → verifying applicant identification & family relations document (health insurance card, attested copy, and so on), ③ third person or representative → verifying applicant identification & letter of attorney & certificate of one's seal impression.

Second, also checked required documents of applicant in accordance with upper standard when situation of medical image issuance in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during 3 month 2008.5.1~2008.7.31.

Third, developed a work process by triangular position of issuance procedure for situation when verifying required documents & management of unpreparedness.

Result : Look all over the our manufactured output in the hospital – satisfy the all conditions → 4 place(12%), possibly request everyone → 4 place(12%), and apply in the clinic section → 9 place(27%) that does not medical imaging issuance office, so we don't know about required documents condition, and look into whether meet or not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on upper 3month survey – satisfy the all conditions → 629 case(49%), prepare a one part → 416 case(33%), insufficiency of all document → 226case(18%). On the authority of upper research result, we are establishing the service model mapping for objective reception when image export situation through triangular position of issuance procedure and reduce of friction with patient and promote the patient convenience.

Conclusion : The PACS is classified under medical machinery that mean indicates about higher importance of medical information therefore medical information administrator's who already received professional education & mind, are performer about issuance process only and also have to provide under ID checking process exhaustively.

Key Words : PAC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dical imaging